

◆ 서울특별시규칙 제4606호

**서울특별시 규칙 일본어 투 표현 및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**

서울특별시 규칙 일본어 투 표현 및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 
2023년 12월 29일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일본어 투 표현, 만 나이, 현행화가 필요한 인용조문 및 부서명칭 등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우리 시 규칙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「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 단서 중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한하여”를 “한정하여”로 한다.

별표 1 중 “한하여”를 “한정하여”로 한다.

제4조(「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7항 중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한다.

별표 중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경우에 한하여”를 “경우에만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본문 중 “한하여”를 “한정하여”로 한다.

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한하여”를 “한정하여”로 한다.

별표 2 제2호의 배정대상·차형 및 대수란 중 “경우에 한하여”를 “경우에만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제1항 단서 중 “경우에 한하여”를 “경우에만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단서 중 “때에 한하여” 를 “때만” 으로 한다.

제8조(「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한하여” 를 각각 “한정하여” 로 한다.

별표의 신고내용란 중 “(제2조제1항제1호)” 를 “(제3조제1항제1호)” 로 하고, “(제2조제1항제3호)” 를 “(제3조제1항제3호)” 로 하고, “(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)” 를 “(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)” 로 한다.

제9조(「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·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·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한하여” 를 “한정하여” 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한하여” 를 “한정하여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경우에 한하여” 를 “경우에는” 으로 한다.

제10조(「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뒷쪽 중 “한하여” 를 “한정하여” 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뒷쪽 중 “한하여” 를 “한정하여” 로 한다.

제11조(「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뒷면 중 “한하여” 를 “한정하여” 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뒷면 중 “한하여” 를 “한정하여” 로 한다.

제12조(「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관사운영 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관사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단서 중 “한하여” 를 “한정하여” 로 한다.

제13조(「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한하여” 를 “한정하여” 로 한다.

제14조(「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경우에 한하여” 를 “경우에만” 으로 한다.

제2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31조 본문 중 “한하여” 를 “한정하여” 로 한다.

제54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.

제15조(「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제5조제1호나목 중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4호다목”을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1항제4호다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제5조제1호나목을 제외한 지역

제5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다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제5조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 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업지역 제12조제2항 단서 중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한 번만”으로 한다.

별표 1 중 “경우에 한하여”를 “경우에만”으로 한다.

제16조(「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우에 한하여”를 “경우에만”으로 한다.

제17조(「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경우에 한하여”를 “경우”로 한다.

제18조(「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한하여”를 “한정하여”로 한다.

제19조(「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경우에 한하여”를 “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20조(「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경우에 한하여”를 “경우에만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한하여” 를 “한정하여” 로 한다.

제21조(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단서 중 “한하여” 를 “한정하여” 로 한다.

제22조(「서울특별시 인사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9 제1호의 비고의 제1호 중 “한하여” 를 “한정하여” 로 한다.

별표 23 제1호가목의 주 중 “경우에 한하여” 를 “경우에만” 으로 한다.

제23조(「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우에 한하여” 를 “경우에만” 으로 한다.

제47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24조(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 중 “한하여” 를 “한정하여” 로 한다.

제25조(「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한하여” 를 “한정하여” 로 한다.

제26조(「서울특별시 홍보물·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홍보물·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1회에 한하여” 를 “한 차례만” 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(조직담당관)” 을 각각 “(홍보담당관)” 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조직담당관” 을 “홍보담당관” 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조직담당관” 을 “홍보담당관” 으로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중 “(조직담당관)” 을 “(홍보담당관)” 으로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 중 “조직담당관(종합자료관장)” 을 “홍보담당관” 으로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 중 “조직담당관(종합자료관장)” 을 “홍보담당관” 으로 한다.

별지 제10호서식 중 “조직담당관(종합자료관장)” 을 “홍보담당관” 으로 한다.

제27조(「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 전단 중 “경우에 한하여” 를 “경우에만” 으로 한다.

제15조제4항 후단 중 “경우에 한하여” 를 “경우에만” 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26조 중 “ ‘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운영관리시스템’ ” 을 “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” 으로 한다.

제28조(「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 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2호 단서 중 “1회에 한하여” 를 “한 차례만” 으로 한다.

제29조(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후단 중 “한하여” 를 “한정하여” 로 한다.

별표 2의 비고 제4호 중 “경우에 한하여” 를 “경우에만” 으로 한다.

별표 5의 컬러전광판(대형)의 기본료란 나목 중 “한하여” 를 “한정하여” 로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 중 “한하여” 를 “한정하여” 로 한다.

제30조(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본문 중 “만 65세” 를 “65세” 로 한다.

제31조(「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3호나목 본문 중 “만 14세” 를 “14세” 로 한다.

제32조(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제4호 중 “만 8세” 를 “8세” 로 한다.

제33조(「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·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·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 본문 중 “연구지원부장” 을 “운영기획부장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연구지원부장” 을 “운영기획부장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“연구지원부장” 을 “운영기획부장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연구지원부장” 을 “운영기획부장” 으로 한다.

제34조(「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운영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인재개발과 및 구조구급교육센터” 를 “소방교육훈련센터” 로 한다.

제35조(「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

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제14조제2항제5호” 를 “제14조제3항” 으로 한다.

제36조(「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” 을 “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” 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」” 를 “「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」” 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」” 를 “「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」” 로, “제4조제3항” 을 “제4조” 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제6조” 를 “제5조” 로, “30일” 을 “60일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유급병가” 를 “서울특별시 입원 생활비 지원” 으로 한다.

제37조(「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” 을 “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” 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「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」 (행정안전부령) 제3조제2항” 을 “「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」 제3조제2항” 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「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지침」” 을 “「서울특별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」” 으로 한다.

제19조 중 “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지침” 을 “「서울특별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」” 으로 한다.

제38조(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4. “공공시설등” 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30조” 를 “법 제30조” 로, “및 영 제60조” 를 “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 제60조” 로 한다.

제39조(「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보도너비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제40조(「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시정연구담당관” 을 “조직담당관” 으로 한다.

제41조(「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)” 을 “(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9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(이하 “센터” )” 를 “제1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(이하 “기관” 이) 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센터는” 을 “기관은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“센터” 를 각각 “기관” 으로 한다.

제4조 전단 중 “센터” 를 “기관” 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장애인인권센터의 재정적 지원)” 을 “(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재정적 지원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센터” 를 각각 “기관” 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제11조제1항에서 규정된” 을 “제12조제1항에서 규정된 서울특별시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2조제2항” 을 “제13조제2항” 으로 한다.

제42조(「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제15조제1호” 를 “제16조제1호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5조제2호” 를 “제16조제2호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5조제3호에 따른 멸실” 을 “제16조제3호에 따른 멸실 및 공공성 훼손” 으로, “따른 그” 를 “따른 형태 변형 등 선정 당시와 비교하여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및 제5호에 따른 그” 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중 “「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 제15조” 를 “「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 제16조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개정이유

우리 시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 투 표현, 만 나이, 현행화가 필요한 인용조문 및 부서 명칭 등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우리 시 규칙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일본어 투 표현 "한하여" 정비 : 규칙 28개(조문 45건)

나. 만 나이 정비 : 규칙 3개(조문 3건)

다. 상위법령 또는 조례 개정에 따라 규칙 현행화 : 규칙 10개(조문 40건)

라.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현행화 : 규칙 4개(조문 14건)

마. 그 밖에 경미한 오기 수정 : 규칙 4개(조문 5건)